

NHN

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: 2020-11-12

개정 : 2022-08-08

목차

1. 총칙
2. 부칙

제1장. 총칙

제1조(목적)

1. 본 규정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2.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(구성)

1.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.
2.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)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,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3. 대표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대표위원)

1.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(이하 "대표위원")를 선정하며,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2. 대표위원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3.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소집)

1. 위원회는 대표위원이 소집한다.
2. 각 위원은 대표위원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3.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 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6조(기능 및 권한)

1.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2.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2-1. 임시주주총회, 이사회 소집청구
 - 2-2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- 2-3.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- 2-4.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 - 2-5.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
 - 2-6. 업무·재산 상태조사
 - 2-7.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- 2-8. 외부감사인의 선임·변경·해임

- 2-9. 내부회계관리규정 제·개정
- 2-10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
- 2-11.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
- 2-12.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평가
- 2-13. 기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3.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- 3-1.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 - 3-2.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
 - 3-3.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청취
 - 3-4. 이사의 법령/정관 위반행위 보고
 - 3-5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
 - 3-6.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인지 시 조사 및 보고
 - 3-7. 기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
제7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1.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8조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9조(감사록)

1.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